

서울고등법원 2024. 11. 7 선고 2023나20597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1. 7 선고 2023나205979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1가합55790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강문경, 도주은

피고, 피항소인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재완, 장세인

변론 종결2024. 9. 5.

판결 선고2024. 11. 7.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1가합55790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별지 1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별지 2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6. 14. 접수 제603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26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7면 20~21행의 "(이 사건 소 중 주주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에 관한 본안전항변)"을 "(이 사건 소 중 주주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에 관한 본안전항변)."으로 고친다.

○ 제8면 2~3행의 "관련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2억 3,800만 원만이 원고의 D에 대한 금전채권으로 인정되었다."를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 금액은 2억 3,800만 원 상당일 뿐이다."로, 18행의 "관련 소유권확인 소송에서"를 "관련 주주권확인 소송에서"로 각 고친다.

2)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제1심에서 2023. 8. 16.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D에 대한 배당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 등에 대한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으로(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카합10111), 위 결과에 따라 D의 구체적인 재무상태를 파악한 후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겠다고 하였으나, 갑 제3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이루어져 그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원고는 이 법원에서 다시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있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카합10061) 이에 따라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내역을 증명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제10면 5~6행의 "그러나 관련 주주권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액으로 2억 3,800만 원만 인정되었다(을 제5호증 5쪽)."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원고가 D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사건(대구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가합211031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1. 23. 선고 2022나27612 판결)에서,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액으로 2억 3,800만 원만 인정되었다(한편 원고는 위 사건의 제1심에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으로 2억 5,800만 원이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추가로 9,900만 원이 인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갑 제3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사건의 제1심에서 인용된 2억 5,800만 원 중 대여금채권 2억 3,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은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인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9,900만 원도 마찬가지로 구상금채권액인 것으로 인정된다.』

○ 제12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H이 M에게 이 사건 별지 1번 부동산을 매각함에 따라 원고가 위 부동산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순이익인 51,158,790,000원 중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원고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25,579,395,000원(= 51,158,790,000원 × 1/2)을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순이익 51,158,790,000원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토지신탁계약상 사업의 목표 또는 예상 수지를 추산한 '사업수지표'에 기재된 금액일 뿐, 이를 들어 원고가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손해배상채권 금액의 확정을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가합100551로 H, M, M의

대표이사인 Z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은 위 소송의 피고로 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위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D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채동수

판사남양우

판사홍성욱

별지